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0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내 업무 행위에 대한 12개월 영업정지 근거 신설	3
2. 마약류 범죄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10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 2)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내 업무 행위에 대한 12개월 영업정지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1년 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고목 및 같은 항 제2호 카목 단서 신설).

[illegible]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 허. (생략) <u><신설></u>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가. ~ 차. (생략)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u><단서 신설></u> ② ~ ④ (생략)	1. ----- ----- ----- 가. ~ 허. (현행과 같음) <u>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u> 2. -----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 -<u>경우. 다만, 제1호고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음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달리,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이하 ‘의사’)는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지정 없이 제2조 아목 또는 자목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바로 마약류취급자로 인정됨.

□ 한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처분을 규정한 제44조는 제1항제2호에서 이 법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²⁾,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각 호 생략)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1호·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과목·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허가 등 취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지정·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국민의 권리·의무에 침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법원은 해당 시행규칙에 근거한 12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한 바 있음⁴⁾.

-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현행법에 따른 허가 등 취소 사유의 하나인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이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다)한다.
5.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II. 개별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지정·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II. 개별기준 (생략)

4) 인천지방법원 2025.7.4. 선고 2025구단50186 판결

우'에 해당하면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업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마약류취급자 업무를 할 경우 12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위반행위(제4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카목까지) 중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제4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여전히 규제 공백이 잔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4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규정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는 허가 등 취소를 갈음하여 1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의안번호 2219367,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처분 중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한 마약류취급자격 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12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상향하여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등 개정안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나, 이를 법률로 상향할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비고의적이거나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위반행위의 고의성·중대성 등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진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2. 마약류 범죄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u>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u>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u>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u>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보상금) ----- ----- <u>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u> ----- ----- <u>신고, 고발 또는</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 뿐만 아니라 발각된 후에 신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신고, 고발, 검거한 사람 뿐만 아니라 검거에 협조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류 범죄의 경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및 검거가 신고·제보·고발 등 외부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신고·고발·검거와 달리 협조의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검거 협조의 의미와 범위 및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54조 본문이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신고, 고발, 검거 및 검거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외를 규정한 같은 조 단서는 신고, 고발, 검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의 범인 검거에 협조한 행위를 신고, 고발, 검거한 행위와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거에 협조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범죄 수사 개시 이후라도 범인 검거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핵심 단서를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려는 등 개정안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범죄 발각 이후 수사 협조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나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신고·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고제도의 남용 및 의료현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보상금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